

2025년 4분기 예산전용 보고

□ 예산전용 개요

- 관련근거 :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2 제3항

제55조의2(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) ③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보고내용 : 2025년 4분기 예산전용 보고

※ 예산전용: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 변경, 단위사업 내 목그룹 간 변경하여 사용
(목그룹 : 인건비-100, 물건비-200, 경상이전-300, 자본지출-400 등)

□ 2025년 4분기 예산전용 내역 : 총 1건, 12백만원

- 전용 세부내역

(단위 : 천원)

부서	사업명	통계목	예산액	감액	증액	승인일자	전용사유
합계				△11,798	11,798		
산업 입지과 (1건)	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	201-01 사무관리비	752,480	△11,798	-	'25.12.19.	상암 DMC 미매각용지의 매각공고를 위한 신문광고료 지급
	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	308-13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	40,000	-	11,798		